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2016. 5.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5월 4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6개 조항)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안 제9조)
-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1개 조항)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수탁(안 제4조)
-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10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게 제정·시행되어 통일된 자치법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15. 8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표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조례 마련을 위해 기본안(표준안) 내용에 '16.1월 징수체계개편 시행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 개편 내용(2011년도)

종 전	개편 후	자치단체 조례
지방세법(총칙편)	지방세기본법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지방세법(개별법)	지방세법	마포구 구세 조례
지방세법(면제경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51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비 고
51개 조항	10개 조항	

- 1)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6개 조항
 -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교부 금전의 예탁), 안 제7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2)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1개 조항
 - 안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수탁)
- 3)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 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 10조(시행규칙)

○ 주요 조항별 개정내용으로는

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1) 안 제3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등) :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2)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함

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전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안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또한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음

② 이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4) 안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함

5) 안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함.

6) 안 제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 1천만 원으로 하되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1) 안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 서울시 관할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음

② 이때에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 시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1)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3) 안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라. 동(同) 조례 삭제, 변경이동 현황

【삭제 조례 현황】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4조(세목),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제10조(일반 우편송달부), 제2장(부과징수),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등), 제13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제19조(구세 환급금의 총당 등), 제20조(구세 환급금의 통지 등),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변경 이동조례 현황】 제3조(적용)=>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제6조의 2(전국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특례)=>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특례), 제7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제10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제5조(서류송달의방법), 제17조(교부금전의예탁)=>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 “별표 1”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현황표 1부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3.31.~4.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2015.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표준안)과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토록 한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동안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는 물론 지방세법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간 다른 지방세법 적용으로 제기되었던 주민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 현황

※ 참고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종전 조례	개정조례	참고법령
제1장 총칙	삭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삭제	법제2조
제3조(적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세목)	삭제	법제8조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법제6조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	삭제	법제6조
6조의 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특례)	제4조(전국무관할자동차등록 관례특례)	법제6조
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이동	
제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삭제	영제7조
제9조(서류송달의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법제30조
제10조(일반우편 송달부)	삭제	제30조제6항
제2장 부과징수	삭제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등)	삭제	제28조제2항
제13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삭제	제62조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삭제	법제64조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삭제	법제65조
제16조(체납또는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삭제	법제66조
제17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제72조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삭제	법제73조
제19조(구세환급금의 총당 등)	삭제	법제76조
제2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삭제	법제28조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삭제	법제80조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삭제	근거법 없음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삭제	법제84조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부과에 위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

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 타법개정]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2.23.] [대통령령 제26990호, 2016.2.23., 일부개정]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